

##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 안내

1. 규정명 :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
2. 제정(변경)의 필요성 : 조직개편 반영
3. 주요 제정(변경)내용 :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명 등 변경
4.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: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익 보호 (현행과 동일)
5. 시행일자 : 2022년 1월 1일
6. 적용 대상(범위) : 은행의 모든 임직원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.  
다만, 은행 업무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 
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.  
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,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위임에 따른  
하위 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 
관련 법규에 따른다.

※ 첨부 :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대비표

(첨 부)

##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」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후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총 칙</b></p> <p><b>제1조 ~ 제2조</b> &lt;생략&gt;</p> 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&lt;생략&gt;</p> <p>10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"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·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[별표2]에서 정한 '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'으로 <b>손님행복그룹</b>을 말한다.</p> <p>11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"란 감독규정 [별표2]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 "<b>손님행복그룹장</b>"을 말한다.</p> <p>12. ~ 13. &lt;생략&gt;</p> <p><b>제4조 ~ 제25조</b> &lt;생략&gt;</p> <p><b>제26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)</b></p> <p>① ~ ⑤ &lt;생략&gt;</p> <p>⑥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<b>소비자리스크 관리 소관부서</b>, 준법감시부서 등 간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7조 ~ 제37조</b>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정&gt; ~ 부칙&lt;1&gt;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설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총 칙</b></p> <p><b>제1조 ~ 제2조</b> &lt;좌동&gt;</p> <p><b>제3조(용어의 정의)</b>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&lt;좌동&gt;</p> <p>10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"이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·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감독규정 [별표2]에서 정한 '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'으로 <b>소비자보호그룹</b>을 말한다.</p> <p>11. "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"란 감독규정 [별표2]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으로 "<b>소비자보호그룹장</b>"을 말한다.</p> <p>12. ~ 13. &lt;좌동&gt;</p> <p><b>제4조 ~ 제25조</b> &lt;좌동&gt;</p> <p><b>제26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)</b></p> <p>① ~ ⑤ &lt;좌동&gt;</p> <p>⑥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<b>&lt;삭제&gt;</b> 준법감시부서 등 간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7조 ~ 제37조</b>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&lt;제정&gt; ~ 부칙&lt;1&gt;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칙&lt;2&gt;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